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280호(號) 1927(昭和 2)년 12월 5일 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410호(號)

1925(大正 14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65호(號)에 의하여 1925(大正 14)년 2월 사고(社告) 제 212호(號) 남만주철도주식회사(南滿洲鐵道株式會社), 금강산전기철도주식회사(金剛山電氣鐵道株式會社) 연락 여객 및 하물 운수규칙[聯絡旅客及荷物運輸規則] 중(中)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12월 5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자작(子爵) 사이토 마코토(齋藤實)

제14조(條) 연락여객(聯絡旅客)으로부터 승차권면(乘車券面)에 지정(指定)한 등급(等級)에서 우등급(優等級)으로 환승(換乘) 또는 승차권면(乘車券面)에 기재(記載)한 발착구간(發著區間)과 다른 구간(區間)으로 방향(方向) 변경(變更)의 청구(請求)가 유(有)한 때는 모두 그 취급(取扱)을 하는 것으로 함.

승차권(乘車券) 분실(紛失)의 신청(申請)이 유(有)한 때도 역시 동일(同一)함.

제16조(條)제2호(號) 중(中) 「사체(死體)」를 삭제(削除)함.

제16조(條)의2 사체(死體) 탁송(託送)의 신청을 받은 경우는 수송열차(輸送列車) 기타(其他)와 상호(相互) 협의(協議)를 한 상(上)에서 이 수탁(受託)을 하는 것으로 함.